



제 430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부두운영계약 체결 주체 명확화 〉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3720호

2025.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부두운영계약 체결 주체 명확화	3
[참고자료]	1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0. 27.

3. 회 부 일 : 2025. 10.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를 “항만시설운영자등”이라 하고,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항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만은 「항만법」에 따라 국가관리항만과 지방관리항만으로 구분되는데, 항만시설운영자등이 관리하는 항만이 국가관리항만에 국한되어 있어 지방관리항만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률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는 본래 「항만법」의 권한 위임 규정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방관리항만의 항만시설 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가 항만시설운영자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22년 지방관리항만 운영사무를 시·도에 이양하는 취지로 「항만법」이 개정되면서 시·도지

사가 항만시설운영자에서 제외된 결과임.

이에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를 “항만시설운영자등”에서 항만운송사업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청”으로 변경함으로써 지방관리항만의 운영 주체인 시·도지사 또한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 본문 등).

Ⅲ. 검토의견

1. 부두운영계약 체결 주체 명확화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를 “항만시설운영자등”(항만 시설운영자 또는 항만공사)에서 “관리청등”(관리청 또는 항만공사)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 제26조의6, 제26조의7, 제26조의8, 제26조의9).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 ⑤ (생략)	제2조(정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이 법에서 “부두운영회사”란 제3조제1호에 따른 항만하역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시설운영자등”이라 한다)와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및 그 항만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부대시설 등을 일괄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⑥ ----- ----- ----- -----제7항에 따른 관리청----- ----- -----관 리청등----- ----- ----- ----- -----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2. (생략)

⑦ . ⑧ (생략)

제26조의6(부두운영계약의 체결 등)

①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항만 운영의 효율성 및 항만운송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26조의7(화물유치 계획 등의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 ①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26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부두운영회사가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데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제26조의8(부두운영회사 운영성과의 평가) ① (생략)

②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1항에

-----.

-----.

1. 2. (현행과 같음)

⑦ . ⑧ (현행과 같음)

제26조의6(부두운영계약의 체결 등)

① 관리청등-----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의7(화물유치 계획 등의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 ① 관리청등-----

-----.

-----.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의8(부두운영회사 운영성과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청등-----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부두운영 회사에 대하여 항만시설등의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6조의9(부두운영계약의 해지) ① 항만시설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부두운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계약을 해지하려면 서면으로 그 뜻을 부두운영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 ----- -----.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의9(부두운영계약의 해지) ① 관리청등----- ----- -----. 1. ~ 3. (현행과 같음) ② 관리청등----- ----- ----- -----.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¹⁾에 따르면, 부두운영계약 체결 주체는 「항만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

1)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정의) ⑥ 이 법에서 “부두운영회사”란 제3조제1호에 따른 항만하역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시설운영자등”이라 한다)와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및 그 항만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부대시설 등을 일괄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컨테이너 부두로 정하여 고시한 항만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2. 그 밖에 특정 화물에 대하여 전용 사용되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두운영회사가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항만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제26조의6(부두운영계약의 체결 등) ①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항만 운영의 효율성 및 항만운송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공사(이하 “항만시설운영자등”이라 함)로 규정하고 있으며, 항만시설운영자²⁾는 「항만법」 제104조³⁾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위탁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항만법」 및 「항만법 시행령」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이하 “국가관리무역항등”이라 함)에 관한 항만시설의 운영 권한에 대해서만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⁴⁾을 두고 있고,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이하 “지방관리무역항등”이라 함)에 관한 항만시설의 운영

2) 「항만법」

제41조(항만시설의 사용) ① 항만시설(항로표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관리청^[제10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사용허가를 받을 것
2. 관리청과 임대계약을 체결할 것
3. 항만시설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할 것
4. 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할 것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임대계약자”라 한다)의 승낙을 받을 것

3) 「항만법」

제104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 「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른 항만공사, 「한국해운조합법」 제4조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4) 「항만법 시행령」

제93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3. 법 제1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만시설의 국가 귀속 조치 및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21.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변경등록
26.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조치
27. 법 제41조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및 항만시설 사용신고의 수리
28. 법 제42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사용료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의 지급,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의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신고의 수리
29. 법 제43조(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의 사용방법,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신고의 수리 및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명령 (※ 항만시설의 운영 권한의 위임에 해당하는 각 호만 기재)

권한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임 규정⁵⁾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관리무역항등에 관한 부두운영계약 체결 주체에 시·도지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 이는 종전의 「항만법」 체계가 항만시설 운영 권한을 원칙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여하면서 국가관리무역항등의 항만시설 운영 권한 일부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고, 지방관리무역항등의 항만시설 운영 권한은 「항만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에 따른 항만 관리청 변경 내역 >

구 분		이 전 (‘21.1. 법 시행전)	현 행 (‘21.1. 법 시행후)
무역항	국가관리무역항 (14개소)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 및 위임)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 및 위임)
	지방관리무역항 (17개소)		시·도지사
연안항	국가관리연안항 (12개소)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 및 위임)
	지방관리연안항 (19개소)		시·도지사

5) 「항만법 시행령」

제93조(권한의 위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항만시설의 지정·고시
2. 삭제 <2022. 7. 4.>
3. 삭제 <2022. 7. 4.>
4. 삭제 <2022. 7. 4.>
5. 삭제 <2022. 7. 4.>

6. 법 제113조제1항제11호, 제12호(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법 제6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의 자료제출 요청 및 출입검사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3호(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측량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4호(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측량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6)(이하 “「지방일괄 이양법」”이라 함)제정에 따라 국가관리무역항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을, 지방관리무역항등은 시·도지사를 관리청으로 규정하도록 「항만법」을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항만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방관리무역항등의 시·도지사 위임 조항을 삭제(2022. 7. 4.)함에 따라 이러한 법률적 공백이 발생하게 된 것임.

<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른 「항만법 시행령」 제93조제2항 개정 사항 >

종전 규정 [대통령령 제31332호, 2020. 12. 29, 개정]	개정 규정 [대통령령 제32763호, 2022. 7. 4, 개정]
○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1. 법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항만시설의 지정·고시	1. (종전과 같음)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영계획의 제정·운영	2. (삭 제)
3. 법 제25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변경등록	3. (삭 제)
4. 법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입통제, 출입통제의 해제 및 공고	4. (삭 제)
5.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삭 제)
6. 법 제113조(같은 조 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6. (종전과 같음)

6)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 2021.1.1.] [법률 제17007호, 2020.2.18., 제정] - 「항만법」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

□ 이러한 법률적 미비에 따라 경상남도의 경우 시·도지사의 지방관리무역항 부두운영계약 체결 가능 여부에 대한 사항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고,

법제처는 「지방일괄이양법」의 취지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방관리무역항등의 부두운영계약 체결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보이나, 지방관리무역항등의 관리청인 시·도지사가 부두운영계약 체결 주체에 포함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법령정비 권고⁷⁾(2025. 9.)를 한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은 「지방일괄이양법」의 개정에 따른 현행법의 법률 공백 및 흠결을 보완하고 지방관리항만의 운영 주체인 시·도지사 또한

7) 경상남도 - 지방관리무역항 등의 관리청인 시·도지사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회사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6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5-0414, 2025. 9. 1., 경상남도]

【회답】

지방관리무역항등의 관리청인 시·도지사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회사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유】

(이전 부분 생략) 그리고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6제1항에서 항만시설운영자등이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관리무역항등에 대해서는 「항만법」 제10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자(「항만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한 것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관리무역항등의 경우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같은 규정에서 시·도지사를 부두운영계약 체결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방관리무역항등에 대해서는 항만시설의 관리·운영 및 계약 체결 권한을 지닌 시·도지사가 해당 규정에 따라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중략)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항만법」 제41조제1항 및 관련 규정들을 개정한 취지는 지방관리무역항등의 사무를 시·도로 이양하려는 취지이지, 항만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을 국가관리무역항등과 지방관리무역항등에 대해 구분해서 적용하거나, 종전에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었던 권한을 제한하려는 취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지방관리무역항등의 관리청인 시·도지사도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자치분권을 확대하려는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이하 생략)

※ 법령정비 권고사항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회사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에 지방관리무역항등의 관리청인 시·도지사가 포함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
법조치로 보임.

- 또한, 현재 9개 무역항, 34개 부두운영회사의 부두운영계약 체결주
체는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항만공사로서, 시·도지사도
부두운영회사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지
방관리항만의 항만시설 운영주체인 관리청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입법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항만별 부두운영계약 체결 현황 >

항명	부두운영계약 체결 주체	부두운영회사	부두위치	안벽(m)	임대면적(m ²)
부산항	항만공사	인터지스중앙부두(주)	감천항 중앙부두	590	83,425
	항만공사	인터지스(주)	북항 7부두	659	81,789
	항만공사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주)	신항 다목적부두	400	89,644
인천항	항만공사	인천내항부두운영(주)	내항 1~6, 8부두	5,928	1,342,584
	항만공사	(주)아이엔티씨	북항 목재부두	450	90,052
	항만공사	인천북항다목적부두(주)	북항 다목적부두	280	70,969
울산항	항만공사	울산항만운영(주)	본항 1, 2, 3(31)부두	777	140,743
	항만공사	(주)신홍사	본항 3(32), 4부두	469	12,347
	항만공사	고려항만(주)	본항 5, 6(61,62)부두	610	88,112
	항만공사	(주)한국보팩터미널	본항 6(63)부두	200	18,754
	항만공사	울산항6·7부두운영(주)	본항 6(64, 65), 7, 8부두	810	69,378
마산항	지방해양수산청	마산항5부두운영(주)	5부두	420	43,553
군산항	지방해양수산청	CJ대한통운(주)	1(11-13), 2(21-23), 5(51,52)부두	1,496	231,444
	지방해양수산청	세방(주)	3(32,33), 5(55-58)부두	1,260	234,351
	지방해양수산청	한솔로지스틱스(주)	5부두(53,54)	420	61,315
	지방해양수산청	(주)선광	6부두(61,62)	450	146,833
	지방해양수산청	GCT(주)	6부두(63,64)	480	172,383
	지방해양수산청	군산항7부두운영(주)	7부두(71,72,73)	800	366,476

항명	부두운영계약 체결 주체	부두운영회사	부두위치	안벽(m)	임대면적(㎡)
목포항	지방해양수산청	CJ대한통운(주)	대불부두(62, 63)	420	99,444
	지방해양수산청	세방(주)	대불부두(64, 65)	460	114,390
	지방해양수산청	목포국제자동차부두(주)	신항 자동차부두	240	95,400
	지방해양수산청	대불부두(주)	대불부두(61)	210	68,319
평택·당진항	지방해양수산청	평택컨테이너터미널(주)	동부두(6~9)	1,040	416,000
	지방해양수산청	평택항만(주)	동부두(10~12)	720	288,000
	지방해양수산청	평택당진중앙부두(주)	서부두(4~5)	480	189,120
	지방해양수산청	(주)평택당진항만	서부두(6~7)	480	183,585
	지방해양수산청	당진항만(주)	고대부두(7)	240	84,000
	지방해양수산청	당진고대부두운영(주)	고대부두(8)	280	98,000
포항항	지방해양수산청	포스코(주)	신항 1, 4, 5부두	2,313	169,403
	지방해양수산청	동국제강	신항 2부두	182	18,445
대산항	지방해양수산청	대산항만운영(주)	2~5부두	1,622	139,541

자료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현행법상 무역항의 관리주체이면서 부두운영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항만법」 제41조에 따른 관리청(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포함) 및 「항만공사법」 제28조8)에 따른 항만공사에 한정되므로, 이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한다는 취지의 개정

8) 「항만공사법」

제28조(국·공유재산의 전대 등) ① 공사는 항만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제6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된 국·공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전대(제6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된 국·공유재산의 전대는 제외한다)하려면 미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대를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유재산을 대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 또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기부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은 현재 부두운영회사의 부두 운영 현실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19

□ 부두운영회사(TOC) 제도개요

- (도입목적) 항만운영에 민간의 기업경영방식 도입으로 항만생산성제고 및 항만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 도모
 - * 선석, 에이프런, 야적장, 창고, 하역시설 등을 일괄 임대하여 전용하고 하역장비 설치 투자, 선석과 야적장 효율적 운영을 통해 부두의 생산성 제고
- (도입경과) 컨부두와 같이 일반부두에서도 일괄임대 방식 도입 연구 (KMI, '93.7) → 부두운영회사제 기본계획 수립('96.11.) → 부두운영회사제 도입시행('97.1~)
- (도입현황) 9개 항만 34개사 선정 운영

항만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마산항	군산항	목포항	평택항	포항항	대산항
TOC	3개	3개	5개	1개	6개	4개	6개	5개	1개

* 군산항 1개사, 대산항 1개사 신규선정 예정

□ 부두운영회사(TOC) 선정 및 운영

- (선정대상) 항만하역업 등록 업체,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등록 업체, 외국화물 운송업체, 등에게 부두운영회사 선정 참여자격 부여
- (선정기준) 화물유치능력, 투자능력, 재무건전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심사 결과 취득점수 7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
 -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부두운영회사 선정 및 관리지침 근거
- (부두운영) 부두운영회사 표준임대차계약을 바탕으로 최대 5년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며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운영상태 평가
 -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8에 따라 항만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임대료 감면 등) 및 패널티(계약해지 등) 부여